

1. 개정이유

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7242호, 2021. 4. 8. 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나무병원의 등록 사항 변경 시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변경신청 기간을 일부 완화하고,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에게 발급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서식 추가 (안 제1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6,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)
 -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형을 추가하고, 필요시 직접 발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인용 조문의 정비 (안 제12조의6제1항 및 별지 제10호의12서식)
 -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인용 조문을 정비함
- 다. 나무병원 변경등록 신청기간 완화 (안 제19조의7제1항)
 - 나무의사 등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완화하고자 함
- 라. 과징금의 징수절차,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추가 (안 제19조의7제5항 및 제6항)

-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하도록 하고,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관계부처와 합의 전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3.3월 ~ 4월중)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6제1항제3호다목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내”를 “이내(단, 영 제12조의9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영 제12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.

⑥ 영 제12조의10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따른다.

제19조의8제1항제1호 중 “별지 제10호의16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의17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별지 제10호의17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의18서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별지 제10호의18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의19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별지 제10호의19서식”을 “별지 제10호의20서식”으로 한다.

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비고>

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(직접 출력)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0호의12서식 신청인 다목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”
을 “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0
호의17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20서식까지로 하고, 별지 제10호의16서
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1. 자격증

나무의사 자격증	
사 진 3.5cm × 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)	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
위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	

85mm×55mm(백상지 150g/㎡)

< 유 의 사 항 >
1.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2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, 다목,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.
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
나.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
다.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라. 제1호를 위반하여 나무의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마.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
바.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사.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※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2. 상장형 자격증

제 호

나 무 의 사 자 격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거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

사 진
(3.5cm×4.5cm)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 청 장

직인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1. 자격증

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	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 촬영한 것)	자격번호 성 명 생년월일
위 사람은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	

85mm×55mm(백상지 150g/㎡)

< 유 의 사 항 >

1.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2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, 다목,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합니다.
 - 가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
 - 나.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
 - 다.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라. 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
 - 마.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
 - 바.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 - 사.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

※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2. 상장형 자격증

제 호

수 목 치 료 기 술 자 자 격 증

성 명 :

생년월일 :

근거법령: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

사 진
(3.5cm×4.5cm)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 림 청 장

직인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16서식]

과징금 []납부기한 연기
[]분할 납부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 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

신청인	성명
	주소 (전화번호:)

과징금 부과명세	납부통지서 발행번호
	과징금 부과금액
	납부기한

신청사유
신청내용

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7의에 따라 과징금([]납부기한 연기 []분할 납부)을(를)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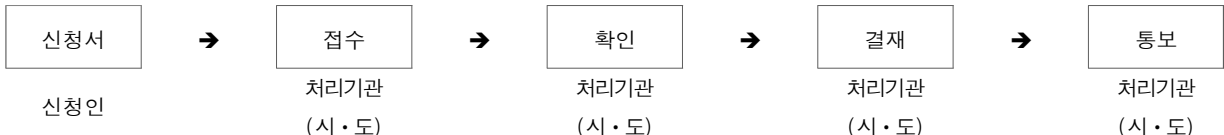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6(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)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19조의6(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.·나. (생략)	3. ----- ----- -----
다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(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7(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)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	제19조의7(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이내(단, 영 제12

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
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
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
도지사(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
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
시·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변경
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의8(진료부·처방전등의
서식 등) ① 법 제21조의12제1
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·진
단서 또는 증명서(이하 “처방전
등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
서식에 따른다.

1. 진료부: 별지 제10호의16서식

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
0일 이내)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영 제12조의10제5항에 따른
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
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
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
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
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.

⑥ 영 제12조의10제7항에 따른
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
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
호의16서식에 따른다.

제19조의8(진료부·처방전등의
서식 등) ① -----

-----.

1. ---- 별지 제10호의17서식

2. 처방전: <u>별지 제10호의17서식</u>	2. ---- <u>별지 제10호의18서식</u>
3. 진단서: <u>별지 제10호의18서식</u>	3. ---- <u>별지 제10호의19서식</u>
4. 증명서: <u>별지 제10호의19서식</u>	4. ---- <u>별지 제10호의20서식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076